한국세무사회



2025년 연말정산 세무

세무법인 현인 세무사/경영학박사 이석정

목 차

※ 2024년 적용되는 연말정산 관련 주요내용

제1장. 근로소득 연말정산 (이론편)

제2장. 근로소득 연말정산 (실전편)

제3장. 연말정산 세액의 계산

제4장. 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 후 4대보험 정산

▮ 연말정산 관련 주요 개정사항

1.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상향 (p9)

근로자(종교인포함) 본인 또는 배우자의 출산,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급여의 비과세 한도를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 <적용시기: 2024.1.1.이후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

2. 육아휴직수당 비과세 적용대상 추가 (p9)

육아휴직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립학교 직원이 사립학교 정관 등에 의하여 지급 받는 육아휴직수당 또한 **월 한도 150만원까지 비과세 대상으로 확대** <적용시기: 2024.1.1.이후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

▮ 연말정산 관련 주요 개정사항

3. 원양어선, 외항선원 및 해외건설 근로자 비과세 확대 (p10)

선원 및 해외건설 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외항선·원양어선 선원 및 해외건설근로 자의 근로소득 비과세 한도를 월 300만원에서 **월 500만원으로 확대** <적용시기: 2024.2.29.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지급받는 소득분부터 적용>

4.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한도 상향 (p10)

종업원, 교직원 및 학생에게 지급하는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금액을 연 500만원 이하의 금액에서 연 700만원 이하로 상향.

개인사업자 당사자 및 친족관계에 있는자, 법인의 지배주주등 및 그 특수관계인은 비과세 제외 <적용시기: 2024.1.1.이후 지급받는 소득분부터 적용>

▮ 연말정산 관련 주요 개정사항

5. 주택연금 이자비용 소득공제 요건 완화 (p10)

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 소득공제 적용요건을 종전 기준시가 9억원 주택에서 기준시가 12억원 주택으로 확대

<적용시기 : 2024.1.1. 이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

6. 자녀세액공제 확대 (p11)

적용대상 자녀를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 및 손자녀(종전 자녀 한정)로 확대하고,

공제세액을 '1명: 15만원, 2명: 35만원(종전 30만원), 3명: 35만원(종전 30만원)

+ 2명초과 1명당 30만원'으로 확대

<적용시기: (공제액 상향) 2024.1.1.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

(공제대상 추가) 2024.1.1. 이후 종합소득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소득세를 결정하거나 연말정산하는 경우부터 적용>

▮ 연말정산 관련 주요 개정사항

7. 산후조리원에 지급하는 의료비 세액공제 강화 (p12)

산후조리원에 지급하는 비용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 기준을 종전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인자에서 **급여제한을 삭제**하여 확대하였고, 본인에 대한 의료비와 동일하게 **공제한도 제한대상에서** 제외함(다만, 산후조리원 지급비용에 대한 한도는 연간 200만원으로 동일)

<적용시기: 2024.1.1.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8.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한도 상향 (p13)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한도를 종전 연 납입한도 240만원에서 **연 300만원으로 상향** <적용시기: 2024.1.1. 이후 납입하는 분부터 적용>

▮ 연말정산 관련 주요 개정사항

9. 월세액 세액공제 소득기준 및 한도 상향 (p13)

월세액 세액공제 대상기준을 종전 총급여 7천만원(종합소득금액 6천만원)에서 **총급여 8천만원** (종합소득금액 7천만원)이하로 확대하고, 공제한도를 종전 75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 <적용시기: 2024.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

10.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 추가 (p14)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상에 2024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 10%를 신설(증가분이란 2023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105%를 초과하는 금액을 말함). 또한, 2024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증가분은 100만원을 한도로 추가공제 하도록 규정 <적용기한: 2025.12.31. 까지>

▋ 제1절. 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

1. 연말정산 의의 (p43)

매년 1월부터 12월까지 발생한 총근로소득에 대한 정확한 세액을 계산한 후 매월 원천징수한 세액의 합계액과 비교하여 추가 징수 또는 환급을 해 주는 과정을 연말정산이라 한다.

구분	연말정산 시기
계속근로자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연도 2월분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
중도퇴사자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
다른 소득이 있는경우	다음연도 5월 중 종합소득세 자진신고

▋ 제1절. 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

2. 연말정산 흐름 (p44)

- ① 국세청 편리한 연말정산으로 각 개인별 연말정산 전략 수립
- ② 연말정산 안내문 회사 공지
- ③ 근로자에게 연말정산 일정 및 정보 제공
- ④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오픈에 맞춰 소득·세액공제신고서와 증명서류 수집
- ⑤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연간 총금액과 소득자별근로소득원천징수부 총금액 일치 확인
- ⑥ 연말정산 세액 계산
- ⑦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소득자보관용)을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 및 내용 확인
- ⑧ 지급명세서, 기부금명세서, 의료비지급명세서 제출(3.10.까지) 및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제출 세액 납부 (3.10.까지 단, 반기별납부자는 7.10.까지)

▋ 제1절. 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

- 3. 연말정산의무자 (p46)
 - (1) 2인 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경우

근로자는 종된근무지(일반적으로 前회사)의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아 주된근무지(일반적으로 現회사)의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고 **주된근무지의 원천징수의** 무자는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 한다.

만일, 근로자가 종전 근무지에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수취하지 못하였다면 현 근로소득 원천징수 의무자는 **현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원천징수**하고 추후 근로자가 **5월달에 종합소득세로 합산신고**해야 한다. 만일 복수의 근로소득을 종합소득세로 합산하지 않는 경우 무신고 가산세가 적용된다.

▋ 제1절. 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

- 3. 연말정산의무자 (p46)
 - (2) 근로자가 소득및세액공제신고서를 미제출한 경우 기본공제 중 해당 **근로소득자 본인에 대한분과 표준세액공제(13만원)**만을 적용한다.
 - (3) 연말정산 하지 않은 경우 원천징수관할 **세무서장은 즉시 연말정산**을 하고 그 소득세를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징수해야 한다.
 - (4) 개인기업의 법인전환(사업양도양수 포함)

개인기업이 법인기업으로 전환하고 개인기업의 **종업원을 계속 고용하며 퇴직급여충당금을 승계** 하는 때에는 그 종업원에 대한 근로소득의 연말정산은 당해 법인이 할 수 있다.

(소득세법 기본통칙 137-0...3).

또한, 사업양수법인이 사용인과 사용인의 **퇴직급여충당금을 승계한 경우 해당 사업양수법인에서** 그 사용인에 대한 연말정산을 할 수 있다.

■ 제1절. 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

4. 연말정산 시기 (p49)

구분	연말정산 시기
계속근로자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연도 2월분 근로소득을 지급한 때
중도퇴사자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
근로소득 추가로 지급	① 추가로 지급하는 때 재연말정산 ② 법원판결일의 다음달 말일까지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인정상여 처분	근로를 제공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연말정산분을 재정산한 후 법인세 신고일의 다음달 10일까지 신고 납부 (반기별 납부자도 동일)
연말정산 시기 놓친 경우	① 근로자 본인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관할세무서장의 경정청구 ② 원천징수의무자 : 경정청구

▋ 제1절. 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

5. 연말정산 세액의 징수 및 환급 (p52)

근로소득세	징수 및 환급
일반적인경우	2025.3.10.(반기별 납부자는 7.10.)까지
추가납부 연말정산세액 > 근로소득	근로소득만큼 원천징수 후 초과세액은 다음달의 근로소득 지급할 때 징수
환급세액	① 환급세액을 해당월 원천징수 세액에서 차감한 금액을 신고하고 차액 납부 ② 조정환급: 연말정산하는 달 원천징수세액을 초과하여 환급액이 발생하는 경우 미환급분에 대해 다음달 이후에서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 ③ 환급세액 환급: 조정환급 대신 환급세액에 대해 초과세액 환급

▋ 제1절. 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

5. 연말정산 세액의 징수 및 환급 (p52)

추가납부세액 분납신청	내용
분납신청	추가납부 세액이 10만원을 초과 : 2월부터 4월까지 나누어 원천징수
구체적 분납방법	① 근로자의 분납신청 의사 확인 후 2월부터 4월까지 분납신청 기간에 원천징수 및 신고납부 ② 분납신청 근로자가 퇴사하는 경우 : 퇴사시 잔여 분납금액 원천징수 ③ 폐업 : 폐업시 잔여 분납금액 원천징수 ④ 지방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도 분납 가능

■ 제1절. 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

6.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제출 및 세액납부 (p54)

구분	내용
월별납부자	2024년 연말정산 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2025년 3월10일까 지 제출 및 세액납부
N C S A D S A D S A D S A D S A D S A D S A D S A D S A D S A D S A D S A D S A D S A D S A D S A D S A D S A	① 2025년 1~6월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연말정산분을 반영 하여 2025년 7월 10일까지 제출 및 세액납부
반기별납부자	 ② 연말정산분 환급신청 - 2025년 1~2월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연말정산분을 반영하여 2025년 3월 10일까지 제출 - 2025년 3~6월분은 2025년 7월 10일까지 제출 및 세액납부

▋ 제1절. 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

- 7. 연말정산 오류에 따른 가산세 (p56)
 - (1) 원천징수의무자 수정신고(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

원천징수의무자가 징수하여야할 세액을 법정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과소납부한 경우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한 세액의 50%(납부고지일까지는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 ⓐ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의 3%에 상당하는 금액
- ⓑ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경과일수×22/100,000)

▋ 제1절. 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

- 8. 지급명세서 제출 (p59)
 - (1) 지급명세서 관련 가산세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할 자가 기한 내 미제출 또는 불분명하거나 기재된 지급금액이 사실과 다른 경우 지급금액 또는 불분명한 지급금액에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결정세액에 가산한다(지급명세서 관련 가산세는 법인세 또는 소득세 신고시 가산세를 기재하는 것임).

- 1)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 ① 지급명세서를 기한까지 미제출 미제출한 지급금액의 1%(3개월 내에 제출하는 경우 0.5%). 단,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 지급명 세서를 미제출하는 경우 0.25%(3개월 내에 제출하는 경우 0.125%)
 - ② 제출된 지급명세서가 불분명하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 해당 금액의 1%. 단, 일용근로자 지급명세서의 경우 불분명하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 해당 금액의 0.25%

▋ 제1절. 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

- 8. 지급명세서 제출 (p61)
 - 2) 유의사항
 - ① 당초 제출한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상 금액을 **착오로 과다하게 기재**하여 이를 수정하여 제출하는 경우 과다기재분에 대해서 **지급명세서 보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함(소득, 서면법규과 -393, 2013.4.8.).
 - ② 소득구분 **착오로 근로소득을 기타소득으로**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지급명세서 미제출가산세**를 적용함(소득원천세과-259, 2012.5.11.

③ 단순착오로 원천징수의무자와 소득자 명의를 잘못 기재하여 원천징수하고 신고, 납부하고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는 경우 지급명세서 보고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소득, 원천세과-590, 2011.11.2.)

- ▋ 제1절. 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
 - 8. 지급명세서 제출 (p61)
 - (2) 제출시기

연말정산분 지급명세서의 제출시기는 다음연도 3월10일까지 이다(휴일인 경우는 휴일의 다음 날로 기한연장되고 원천징수의무자가 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 휴업일 또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다음달 말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3) 지급명세서 제출의무

연말정산분 지급명세서는 면제규정이 없으므로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 ▋ 제1절. 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
 - 9. 비거주자의 연말정산 (p71)
 - (1) 연말정산 방법

국내원천 근로소득이 있는 비거주자의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거주자의 신고와 납부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인적공제 중 비거주자 본인 외에 자에 대한 공제와 특별소득공제, 자녀세액공제 및 특별세액공제를 하지 아니한다.**

(2)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외국인근로자는 거주자처럼 원천징수 후 **연말정산 방법을 선택**하거나 원천징수의무자는 외국 인근로자에게 매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도 불구하고 해당 근**로소 둑에 19%를 원천징수**(이 경우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비과세, 공제, 감면 및 세액 공제는 적용하지 않으며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는다.)하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제2절. 근로소득의 원천징수

- 1. 근로소득 (p73)
 - (1) 근로소득의 개념

일반적으로 고용관계 또는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비독립적 인적용역(임직원)인 근로를 해당 과세기간에 제공함으로써 받는 다음의 소득을 말한다(소득법 20조 1항).

- ①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 ② 법인의 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따라 상여로 받는 소득
- ③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인정상여)
- ④ 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 ⑤ 종업원등 또는 대학의 교직원이 재직 중에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

- ▋ 제2절. 근로소득의 원천징수
 - 2. 일용근로자의 연말정산 (p81)
 - (1) 일용근로자의 개념

일반적으로 근로계약에 따라 같은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건설공사에 종사하는 경우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2) 원천징수 세액 계산

[일급(비과세소득 제외) - 15만원] × 6% × [1-55%(근로소득세액공제)]

(3) 연말정산

지급시 원천징수로서 납세의무가 종결되므로 연말정산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 ▋ 제2절. 근로소득의 원천징수
 - 3. 비과세 근로소득 실비변상적 성격의 비과세 (p84)

구분	내용
자기차량	종업원의 소유차량(본인명의 임차 포함)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 등에 소
운전보조금	요된 실제 여비를 받는 대신에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은 월 20만원까지 비과세
실비변상 정도의 금액	실비변상정도의 금액에 대한 판단은 사규 등에 지급기준이 정하여져 있고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은 비과세
연구보조비	특정 법령에 따른 학교의 교원, 정부 출연기관,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의 기업부설연구소 등 연구활동에
또는 연구활동비	직접 종사하는 자가 지급받는 연구보조비 또는 연구활동비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
종교관련종사자의	종교관련종사자가 소속 종교단체의 규약 또는 소속 종교단체의 의결기구의 의결·승인 등을 통하여 결정된
종교활동비	지급기준에 따라 종교활동을 위하여 통상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지급받은 금액 및 물품은 비과세

- 제2절. 근로소득의 원천징수
 - 3. 비과세 근로소득 복리후생적 성질의 비과세 (p91)

구분	내용
종업원 등의 사택제공이익	주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은 근로소득에 포함되나, 주주 또는 출자자가 아닌 임원과 임원이 아닌 종업원 등이 사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은 비과세
중소기업 종업원의 주택구입·임차자금	중소기업의 종업원이 주택(부수토지 포함)의 구입·임차에 소요되는 자금을 저리 또는 무상으로 대여 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은 비과세
경조금	경조금 중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금액은 비과세

■ 제2절. 근로소득의 원천징수

3. 비과세 근로소득 - 기타의 비과세 (p94)

구분	내용
복무중인 병(兵)이 받는 급여	병역의무의 수행을 위하여 징집ㆍ소집되거나 지원하여 복무 중인 사람으로서 병장 이하의 현역병(지원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를 포함), 의무경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람이 받는 급여는 비과세
특정 법률에 따른 국 방·배상·보상·위자료· 연금 성격의 급여	대표적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수급권자가 받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유족급여 등, 「고용보험법」에 따라 받는 실업급여, 육아휴직 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은 비과세
학자금	근로자(출자임원 포함) 본인의 학자금으로 일정 법에 따른 학교(외국에 있는 유사한 교육기관을 포함)와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입학금·수업료·수강료, 그 밖의 공납금 중 아래 요건을 갖춘 학자금(해당 과 세기간에 납입한도)은 비과세 또한, 종업원이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지급받는 자녀학자금은 지급되는 학자금의 원천이 출연금이 지 또는 출연금의 수익금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비과세

제2절. 근로소득의 원천징수

3. 비과세 근로소득 - 기타의 비과세 (p94)

구분	내용
생산직 등 근로자의 연장근로수당	생산 및 그 관련직에 종사하는 월정액급여 210만원 이하로서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3천만원 이하 인 근로자(일용근로자 포함)가 받는 연 240만원 이내의 연장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수당은 비과세
식대	근로자가 사내급식이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공받는 식사 기타 음식물 또는 근로자가 받는 월 20만원 이하의 식대는 비과세
보육수당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해당 과세기간 개시일을 기준으로 판단) 자녀의 보육과 관련 하여 사용자(종교관련종사자의 경우 소속단체)로부터 받는 급여로서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
사용자가 적립한 종업원의 퇴직급여	퇴직급여로 지급되기 위하여 적립되는 급여는 근로소득에 포함하지 아니하며, 이때 퇴직급여 지급을 위해 적립되는 급여란 근로자가 적립금액 등을 선택할 수 없는 것으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방법으로 적립하는 것을 말한다.

■ 제2절. 근로소득의 원천징수

4. 근로소득의 수입시기 (p112)

근로소득 구분	수입시기	귀속연도
급여	근로를 제공한 날	근로제공일이 속한 연도
잉여금 처분에 의한 상여	해당 법인의 잉여금처분일	처분결의일이 속한 연도
인정상여	해당 사업연도 중 근로를 제공한 날	법인의 결산 사업연도 * 2개 연도에 걸친 때는 각각 해당 사업연도
근로소득으로 보는 임원퇴 직소득금액 한도초과액	지급받거나 지급받기로 한 날	지급받거나 지급받기로 한 연도
연차수당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연도의 다음연도	

- ▋ 제2절. 근로소득의 원천징수
 - 5. 근로소득의 지급시기와 원천징수시기 (p113)

구분	내용	
매월분의 근로소득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	
연말정산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연도 2월분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2월분 근로소득을 2월 말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2월분의 근로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2월 말일), 이중근로, 재취업의 경우도 동일	
1~11월 귀속 급여 12월 31일까지 미지급	근로소득을 12월31일에 지급한 것으로 의제	
12월 귀속 급여 다음연도 2월말까지 미지급	근로소득을 다음연도 2월 말일에 지급한 것으로 의제	

▋ 제2절. 근로소득의 원천징수

5. 근로소득의 지급시기와 원천징수시기 (p114)

구분	른	내용
잉여금 처분에	따른 상여를	3개월이 되는 날에 지급한 것으로 의제. 단, 해당 처분이 1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사이에 결정
처분결정일로부	부터 3개월이	된 경우에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 그 상여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2월 말일에 지급한 것으
되는날까지	미지급	로 의제
세무조사 등에 세법에 따라 처	////////////////////////////////////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날에 지급한 것으로 의제
인정상여(법역	인세 신고)	해당 법인의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일에 지급한 것으로 의제
인정상여(법인/	세 수정신고)	수정신고일에 지급한 것으로 의제

- ▋ 제2절. 근로소득의 원천징수
 - 6. 근로소득 원천징수 세율 (p115)
 - ①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적용
 - ② 근로자가 간이세액표에 따른 세액의 80% 또는 120%를 선택하여 조정신청서 또는 소득, 세액공 제 신고서에 기재하여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후 지급하는 근로소득부터 신청 한 비율을 적용

- 제2절. 근로소득의 원천징수
 - 7. 근로소득 원천징수의무자 (p115)
 - (1) 개요

국내에서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

- (2) 원천징수시기
 - ① 매월분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 다만,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간이세액표에 의한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하고 즉시 연말정산 가능하다.

- ▋ 제2절. 근로소득의 원천징수
 - 7. 근로소득 원천징수의무자 (p116)
 - (3) 원천징수방법

구분	내용
일반적인 경우	해당 월의 급여액을 기준으로 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의 해당란의 세액을 원천징수한다.
소득세 감면대상 외국인기술자에게 지급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의 해당란 세액의 30%~50%를 원천징수한다.
소득세 감면대상 중소기업 취업자에게 지급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의 해당란 세액에 감면율(90%, 70%)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원천징수할 수 있다.
세액공제 대상 근로자에게 지급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상의 세액에 이미 반영되어 있으므로 추가로 공제할 수 없다.
단일세율 적용 신청 외국인근로자에게 지급	비과세근로소득을 공제하기 전의 해당 월급여액의 19%를 원천징수할 수 있다.

- 제2절. 근로소득의 원천징수
 - 8.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제출 및 세금납부 (p123)
 - (1) 개요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납부 및 원 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제출

- (2) 유의사항
 - ① 동일귀속, 지급연월의 원천세 신고서를 여러 번 전송한 경우 신고기한까지 최종 전송한 자료만을 인정
 - ② 홈택스로 전송한 신고서를 삭제하려면 홈택스에서 전자신고 삭제요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 ③ 휴, 폐업한 사업자도 홈택스를 통해 신고 가능
 - ④ 귀속, 지급연월은 신고서를 구분하는 항목이므로 정확하게 작성

제2장. 근로소득 연말정산 (실전편)

- ▋ 제1절. 연말정산 사전준비
 - 1. 연말정산 사전준비 (p125)
 - (1) 연말정산 안내
 - ①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조회 안내
 - ② 서류제출 안내:
 - 근로자의 소득·세액공제 신고서(국세청 간소화 서비스 pdf자료 등)와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조회되지 않는 영수증, 기타 증빙서류의 제출기한 안내
 - ③ 유의사항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서비스 제공기간이 있으니 일자를 확인하여 자료를 조회, 발급
 - 근로자가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미리 부양가족 동의 신청을 하고 자료를 제출

제2장. 근로소득 연말정산 (실전편)

- ▮ 제1절. 연말정산 사전준비
 - 2. 연말정산 제출서류 (p129)
 - (1) 기본서류
 - ① 소득・세액공제신고서
 - ② 의료비 공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 '의료비지급명세서'
 - ③ 기부금 공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 '기부금명세서'
 - ④ 신용카드 공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 '신용카드 소득공제 신청서
 - (2) 인적공제를 파악하기 위한 안내자료

부양가족으로 인한 기본공제(인적공제)는 공제액이 큰 만큼 소득요건, 나이요건을 판단하여 작

제2장. 근로소득 연말정산 (실전편)

▋ 제1절. 연말정산 사전준비

- 3. 편리한 연말정산 (p133)
 - (1) 개요

원천징수의무자가 간편제출 서비스를 이요하는 경우 근로자는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에서 소득·세액공제신고서를 전산작성하여 온라인으로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간편하게 제출 가능

(2) 근로자의 연말정산 기초자료 입력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이용하여 근로자에게 연말정산 서류를 간편제출 받기 위해서는 먼저 회사가 연말정산 기초자료를 등록해야 한다.

(3) 공제신고서 관리

근로자가 간편제출을 통해 제출한 공제신고서 또는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선택하여 제출한 자료 내용을 확인하고 다운로드를 받을 수 있다

- ▋ 제1절. 연말정산 사전준비
 - 4.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p139)
 - (1) 유의사항
 - ①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자료에 대해 근로자 스스로가 공제 요건 충족여부를 판단. 과다하게 소득·세액공제를 받은 경우 과소 납부한 세액과 신고·납부지연가산세를 추가 부담
 - ②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수집되지 않은 자료는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증명서류를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 (취학전 아동 학원비, 기부금 등)

- ▋ 제1절. 연말정산 사전준비
 - 4.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p139)
 - (2) 연말정산 간소화 이용방법
 - ① 근로자는 요건에 맞는 자료만을 선택하여 원천징수의무자(회사)에 제출함으로써 별도의 영수증 제출 없이 증명서류로 인정받을 수 있다.
 - ② 부양가족의 소득・세액공제자료 제공동의 신청
 - 부양가족이 미성년자 자녀인 경우 : 별도의 동의 절차가 없더라도 공제 자료를 조회할 수 있다.
 - 부양가족이 성인인 경우 : 해당 가족의 사전 동의가 있어야 공제 자료를 조회할 수 있다.

- ▋ 제1절. 연말정산 사전준비
 - 4.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p142)
 - (3)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조회 시 대표적인 주의사항

구분	내용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는 금액이 실제 납부한 건강보험료보다 적게 조회되는 경우	실제 납부한 금액으로 급여에서 공제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근로자인 대학생이 학자금 대출을 받아 교육비를 납부한 경우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는 공제대상 교육비 금액에서 학자금 대출을 차감한 금액이 조회되기 때문에 해당 대학교에서 교육비 납입증명서를 발급받아 공제를 받아야 한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는 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자료가 조회되어 소득공제 적용하는 경우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그대로 제공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근로자 스스로 공제요건 충족여 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본인의 의료비 내역이 국세청에 제출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경우	환자가 사전에 '의료비 세액공제증명서류 제출 제외 신청서'를 의료기관에 제출한 경우 국세청에 의료비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다.
자료제공 동의를 하였는데 이혼 등으로 가족관계가 변동 되어 자료제공을 할 필요가 없는 경우	자료제공 동의를 한 부양가족이 취소 신청을 하여야 하며, 홈택스 본인인증, 팩스, 세무서 방문을 통해 취소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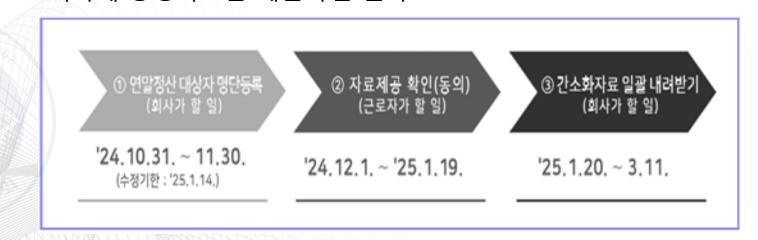
▮ 제1절. 연말정산 사전준비

- 4.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p144)
 - (4) 연말정산 간소화 일괄제공 서비스
 - ①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제도는 일괄제공을 신청한 회사와 근로자에 대해 성실신고를 지원해주고 연말정산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 ② 근로자의 연말정산 자료를 국세청으로부터 한 번에 제공받게 되어 자료 제출안내, 수집에 따른 시간과 비용이 줄어든다는 장점이 있다.

▋ 제1절. 연말정산 사전준비

- 4.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p145)
 - (4) 연말정산 간소화 일괄제공 서비스 진행방법
 - ① 1단계 : 근로자 명단 등록 (24.11.30.까지)
 - 연말정산 대상 근로자 명단(일용직, 중도퇴사자 제외)을 24.10.31.~ 11.30. 중 홈택스에 등록 25.1.14.까지 신규 등록, 수정이 가능
 - 회사 기장업무를 수임한 세무대리인에게 연말정산 업무를 위임한 경우 회사는 연말정산 대상 명단을 다운로드 받아 세무대리인에게 간소화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 ② 2단계: 자료제공 확인(동의) (25.1.19.까지)
 - 근로자는 25.1.19.까지 홈택스에서 자료가 제공되는 회사와 제공되는 자료의 범위를 확인(동의)
 - 최초 1회만 확인(동의)하면 퇴직시까지 국세청이 회사에 자료를 제공

- ▋ 제1절. 연말정산 사전준비
 - 4.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p148)
 - (4) 연말정산 간소화 일괄제공 서비스 진행방법
 - ③ 3단계: 자료 내려받기 (25.1.20.부터)
 - 국세청은 25.1.20.부터 간소화자료 압축파일을 홈택스에서 순차적으로 제공
 - 근로자는 일괄제공된 간소화자료 외에 추가할 사항(수동 발급받은 기부금 영수증 등)이 있는 경우회사에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제1절. 소득공제

1. 근로소득공제 (p151)

근로소득금액 = 총급여 - 근로소득공제 단, 공제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천만원을 공제

총급여(인정상여 포함)액 구간	근로소득공제금액		
500만원 이하	총급여액의 70%		
500만원 초과 1,500만원 이하	350만원 + (총급여액 - 500만원) × 40%		
1,500만원 초과 4,500만원 이하	750만원 + (총급여액 - 1,500만원) × 15%		
4,5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1,200만원 + (총급여액 - 4,500만원) × 5%		
1억원 초과	1,475만원 + (총급여액 - 1억원) × 2%		

- ▋ 제1절. 소득공제
 - 2. 종합소득공제 (p152)
 - (1) 인적공제

	구분		대상	공제액
		기본공제	본인	
	인적공제		배우자	1인당 연 150만원
			부양가족	
		추가공제	경로우대자공제	1인당 연 100만원
			장애인공제	1인당 연 200만원
			부녀자공제	연 50만원
			한부모소득공제	1인당 연 100만원

▋ 제1절. 소득공제

2. 종합소득공제 (p152)

(1) 인적공제 - 기본공제대상자 요건

	구 분	나이요건 (장애인의 경우 나이 제한 없음)	소득 요건	생계 요건	일시 퇴거
근	로자 본인		-		
배우자(학	법정혼인만 인정)	_	연간	_	_
부양 가족 ¹⁾	직계존속2)	만 60세 이상	소득금액 100만원 (근로소득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 (주거형편 별거인정)	_
	직계비속 동거입양자3)	만 20세 이하	만 있는 경우	-	

▋ 제1절. 소득공제

- 2. 종합소득공제 (p153)
 - (1) 인적공제 기본공제대상자 요건

구 분	나이요건 (장애인의 경우 나이 제한 없음)	소득 요건	생계 요건	일시 퇴거
형제자매4)	만 20세 이하 만 60세 이상	총급여 500만원) 이하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생계를 같이해야 함	인정
기초생활수급자	제한 없음			
위탁아동	만 18(20)세 미만5)		-	-

제1절. 소득공제

- 2. 종합소득공제 (p153)
 - (1) 인적공제 기본공제대상자 요건
 - ① 생계요건
 - 배우자 및 직계비속, 입양자를 제외한 부양가족은 근로자의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서 해당 근로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여야 함.
 - 근로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주거의 형편에 따라 별거(국내)하고 있는 경우 생계를 같이하는 것
 - 외국인 거주자가 본국에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부양사실 입증시 공제 가능
 - ② 소득금액 요건
 - 연간 종합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의 합계액이 연간 100만원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인 경우로서 비과세 소득, 분리과세 소득은 제외

▋ 제1절. 소득공제

- 2. 종합소득공제 (p154)
 - (1) 인적공제 기본공제대상자 요건 적용사례

소득	종류	소득금액 합산 제외사례
	금융소득	금융소득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분리과세)
종합소득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 결손 ② 주택임대소득이 인당 2천만원 이하로서 분리과세 선택한 경우
	근로소득	① 순수 근로소득자로서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 ② 일용근로소득 ③ 육아휴직급여 및 출산전후휴가급여, 실업급여 등 비과세 근로소득

▋ 제1절. 소득공제

2. 종합소득공제 (p154)

(1) 인적공제 - 기본공제대상자 요건 적용사례

소득	종류	소득금액 합산 제외사례
종합소득	연금소득	① 공적연금 : 연간 516만원 이하 또는 2001년 이전 불입분을 기초로 수령하는 경우 ② 사적연금 : 연간 1,500만원 이하로서 분리과세 선택한 경우 및 연 간 1,500만원 초과로서 15% 세율 분리과세 선택한 경우
	기타소득	① 복권당첨소득 ②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로서 분리과세 선택한 경우
퇴직	소득	퇴직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
양도소득		양도소득세 비과세이거나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 제1절. 소득공제

- 2. 종합소득공제 (p156)
 - (2) 추가공제

	구 분	공제금액	비고	
	경로우대(70세 이상)	1명당 연 100만원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도	
	장애인	1명당 연 200만원		
出っまっ し	배우자가 있는 여성근로자	연 50만원	월할 계산하지 않고 연액으로 공제 ※ 한부모공제와	
부녀자 공제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종합소득금액 3천만원 이하)		
한부모 공제	배우자가 없는 근로자로서 기본공제대상자인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가 있는 경우	연 100만원	부녀자공제가 중복되는 경우 한부모 공제만 적용	

제1절. 소득공제

- 2. 종합소득공제 (p157)
 - (3) 연금보험료 공제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른 근로자 부담 기여금 또는 개인부담금을 납입한 경우 근로소득에서 공제 가능

(4) 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공제

연금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주택담보노후연금을 받은 경우에는 그 받은 연금에 대해서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이자비용 상당액을 연 200만원 한도로 연금소득에서 공제

공제금액 = Min[①, ②, ③]

- ① 지급받은 연금에 대하여 해당연도에 발생한 이자 상당액
- ② 200만원
- ③ 연금소득금액

제1절. 소득공제

- 3. 특별소득공제 (p158)
 - (1) 보험료 공제

국민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근로자 부담분 전액을 공제

(2) 주택자금공제

구분	공제액	공제한도
① 주택마련저축공제	해당 과세기간저축불입액 × 40%	① + ② 연 400만원
②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공제	해당 과세기간원리금상환액 × 40%	(상환기간에 따라 상이)
③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	해당 과세기간이자상환액 × 100%	

제1절. 소득공제

- 3. 특별소득공제 (p160)
 - (3)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일용근로자 제외)로서 해당 과세기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가 과세연도 중 주택마련저축에 불입한 금액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공제 한다.

(4)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거나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가 취득 당시 주택의 기준시가가 6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그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회사 등 또는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를 지급하였을 때에는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이자 상환액을 그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제1절. 소득공제

- 3. 특별소득공제 (p162)
 - (5)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금융기관 차입분 공제일 경우
 - ① 12월 31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
 - ②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 임차
 - ③ 임대차계약서상 입주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날로부터 전후 3개월 이해 차입한 자금
 - ④ 대출기관에서 임대인 계좌로 직접 입금

▋ 제1절. 소득공제

- 4. 그 밖의 소득공제 (p167)
 - (1) 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

7	분	내용	
가입기간		2000.12.31.이전 가입	
가잍	l대상	만 20세 이상	
저축불	¦입기간	10년 이상	
	불입한도	분기당 300만원	
소득공제	공제비율	연간 납입액25)의 40%	
	공제서류	개인연금저축납입증명서	
공제금액한도		연 72만원(불입액 기준 180만원)	

제1절. 소득공제

- 4. 그 밖의 소득공제 (p167)
 - (2)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
 - ① 개요 : 거주자가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중소기업중앙회 운영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하여 납부하는 공제부금은 해당 연도의 공제부금 납부액과 공제한도 중 적은 금액을 사업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 ② 공제대상: 소기업 소상공인
 - ③ 공제대상소득금액 및 한도

구분	납부 한도액	
사업소득금액이 4천만원 이하	500만원	
사업소득금액이 4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300만원	
사업소득금액이 1억원 초과	200만원	
Min[납부액, 납부한도액] × (사업소득금액 – 부동산임대업의 소득금액) / 사업소득금액		

제1절. 소득공제

- 4. 그 밖의 소득공제 (p172)
 - (3)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 ①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합계액이 총급여액의 25% 초과하는 경우 적용

구분	공제율
전통시장 사용분	<u>40%[80% 개정X]</u>
대중교통 이용분	40%
도서등 사용분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인 경우)	30%
현금영수증, 직불카드 사용분	30%
일반신용카드 사용분	15%

▋ 제1절. 소득공제

- 4. 그 밖의 소득공제 (p172)
 - (3)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 ①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총급여액	공제한도
7천만원 이하	300만원
7천만원 초과	250만원

② 신용카드 등 추가공제 한도

추가공제금액	계산식
① 전통시장 추가공제금액	ᇫᄼᄀᆀ간ᄀᅄᅠᄀᆀᅕᆝᆮᅠᄼᇬᄱᅡᅅ
② 대중교통 추가공제금액	Min(공제가능금액-공제한도, 300만원) 총급여액 7만원 초과자 한도 200만원
③ 도서 등 추가공제금액	0 0 1 1 1 2 0 0 0 0 0 0 0 0 0 0 0 0 0 0
④ 소비증가분 공제금액	Min(공제가능금액-공제한도-①-②-③, 100만원)

제1절. 소득공제

- 4. 그 밖의 소득공제 (p174)
 - (3)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 ③ 사용금액 중 소득공제에서 제외되는 금액

구분	내용	
사업관련비용	사업소득또는 법인과 관련된 비용	
자동차구입	중고자동차 구매시에는 구입금액의 10%를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포함	
보험료 등	4대보험료 및 각종 보험계약(생명,손해 등) 및 공제료	
교육비	수업료・입학금・보육비용 등	
공과금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국세ㆍ지방세, 전기료ㆍ수도료ㆍ가스료ㆍ전화료ㆍ 아파트관리비ㆍTV시청료ㆍ 및 도로통행료	
자동차 리스료	자동차대여사업의 자동차대여로를 포함한 리스료	
자산구입비	취득세 또는 등록면허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구입비용	
금융용역 관련	차입금 이자상환액, 증권거래수수료 등 금융 • 보험용역과 관련된 지급액, 수수료, 보증료 및 이와 유사한 대가	

▮ 제2절. 세액과 감면

1. 산출세액 (p181)

(1) 세율

과세표준	누진공제방식
1,400만원 이하	과세표준 × 6%
1,4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	과세표준 × 15% - 126만원
5,0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과세표준 × 24% - 576만원
8,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과세표준 × 35% - 1천544만원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과세표준 × 38% - 1천994만원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과세표준 × 40% - 2천594만원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과세표준 × 42% - 3천594만원
10억원 초과	과세표준 × 45% - 6천594만원

▋ 제2절. 세액과 감면

2. 세액감면 (p183)

(1)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구분	내용
감면대상자	청년, 60세 이상, 장애인, 경력단절여성
중소기업 범위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감면기간	① 취업일로부터 3년(청년5년)이 되는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소득세의 70%(청년90%) 감면 ② 소득세를 감면받은 최초 취업일부터 계산

▮ 제2절. 세액과 감면

- 2. 세액감면 (p183)
 - (1)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주요 Q&A
 - ① 감면을 적용받던 청년이 다른 중소기업으로 이직하는 경우, 이직 당시 만 34세 이하의 연령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지?
 - : 이직시 연령요건 불필요
 - ② 생애 최초로 취업한 경우에만 감면 적용이 가능한지?
 - : 모든 요건이 충족되는 중소기업에 취업(재취업 포함)한 경우 감면적용이 가능
 - ③ 연도중 급여지급시 감면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를 한 경우, 연말정산시 세액감면을 적용하지 않아도 되는지?
 - : 무관하게 무조건 연말정산시 세액감면을 적용하여야 감면 혜택 적용 가능

▋ 제3절. 세액공제

1. 근로소득세액공제 (p191)

산출세액	공제세액
130만원 이하	산출세액의 55%
130만원 초과	71만5천원 + 130만원 초과금액 × 50%

총급여액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
3천3백만원 이하	74만원
3천3백만원 초과 7천만원 이하	74만원 - [(총급여액 - 3천3백만원)×0.008] → (최저 66만원
7천만원 초과 1.2억원 이하	66만원 - [(총급여액 - 7천만원)×1/2] → (최저 50만원)
1.2억원 초과	50만원 - [(총급여액 - 1.2억원)×1/2] → (최저 20만원)

- ▋ 제3절. 세액공제
 - 2. 자녀세액공제 (p191)
 - (1) 일반 세액공제
 - ① 자녀 1명: 연 15만원, 자녀 2명: 연 35만원
 - ② 자녀 3명이상: 연 35만원 + 2명 초과하는 1명당 30만원
 - (2) 출산·입양 세액공제

공제대상 자녀가 있는 경우 첫째 : 연 30만원, 둘째 : 연50만원, 셋째 이상 : 연 70만원

▋ 제3절. 세액공제

3. 연금계좌 세액공제 (p192)

총급여액 (종합소득금액)	세액공제 대상 연금계좌 납입한도 (퇴직연금 합산시 한도)	공제율
5천5백만원 이하 (4천5백만원 이하)	600만원 (900만원)	15%
5천5백만원 초과 (4천5백만원 초과)		12%

제3절. 세액공제

4. 보험료 세액공제 (p195)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가 해당 과세기간에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보험의 보험계약에 따라 지급하는 보험료를 지급하는 경우 세액공제

공제대상	한도액	세액공제액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종피보험자 포함)으로 하는 보장성보험	연 100만원	12%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는 보장성보험	연 100만원	15%

▋ 제3절. 세액공제

5. 의료비 세액공제 (p196)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나이 및 소득의 제한을 받지 않음)를 위해 해당 과세기 간에 의료비를 지출(지급받은 실손의료보험금 제외)를 지급한 경우 세액공제

항목	공제금액	한도	공제율
일반의료비	공제금액 = 의료비금액-(총급여액×3%)	연 700만원 한도	15%
본인 등 의료비 (6세이하, 65세이상, 장애인, 중증질환자 등)	공제금액 = 의료비금액		15%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만일 일반의료비를 총급여액 3%에 미달하게 지출하였을	없음	20%
난임시술비	경우 3%까지 적은 공제율부 터 순차적으로 차감해야 함)		30%

제3절. 세액공제

6. 교육비 세액공제 (p199)

근로자가 본인 및 기본공제대상자(나이의 제한을 받지 않음)를 위해 공제대상 교육비를 직접 지출 하는 경우 그 세액공제대상 교육비지출액의 15%를 세액공제

구분	대표적인 내용
국내교육비	①수업료, 입학금, 급식비, 교과서대금, 교복구입비용(학생1명당 연50만원 한도), 방과후 학교 수업료 ②근로자 본인의 대학 또는 대학원 수업료, 근로자 본인의 직업능력개발훈련수강료 ③취학전 아동이 학원, 체육시설에서 월단위로 실시하는 교습과정
국외교육비	국외에 소재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법에 다른 학교에 지출한 교육비가 해당
장애인 특수교육비	근로소득자가 기본공제대상자인 장애인(소득금액 제한없음)을 위하여 일정 기관에 지급하는 장애인특수교육비
교육비 공제금액 제외	①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한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받은 장학금 등 ② 재학 중인 학교로부터 받는 장학금 등 ③ 근로자인 학생이 직장으로부터 받는 장학금 등 ④ 부양가족의 대학원 관련 비용 등

제3절. 세액공제

7. 기부금 세액공제 (p204)

근로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세액공제대상 기부금의 15%(해당 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분은 30%, <u>3천만원 초과분은 40%(2024.12 공포예정</u>)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에서 세액공제

구분	해당 기부금
특례 기부금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국방헌금, 천재지변으로 생긴 이재민을 위한 구호금품 ②학교, 의료기관 등에 지출한 금액
우리사주조합 기부금	우리사주조합원이 아닌 자가 우리사주조합에 지출하는 기부금
일반 기부금	① 일반기부금단체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② 학교장이 추천하는 개인에게 지출하는 기부금 ③ 공익단체에 지출하는 기부금

▋ 제3절. 세액공제

7. 기부금 세액공제 (p204)

종류	공제대상금액			
① 정치자금기부금	근로소득금액 × 100%	- 세액공제율 10만원 이하 : 100/110 10만원 초과 : 15%(3천만원 초과 25%)		
② 고향사랑기부금	(근로소득금액 - ①) × 100% (연500만원 한도)	- 세액공제율 10만원 이하 :100/110 10만원 초과 : 15%		
③ 특례기부금	(근로소득금액 - ① - ②) × 100%			
④ 우리사주조합기부금	(근로소득금액 - ① - ② - ③) × 30%			
⑤ 일반기부금	종교단체 기부금이 있는 경우 (근로소득금액 - ① - ② - ③ - ④) × 10% + Min(ⓐ, ⓑ) ⓐ (근로소득금액 - ① - ② - ③ - ④) × 20% ⑤ 종교단체 외 일반기부금			
	종교단체 기부금이 없는 경우 (근로소득금액 - ① - ② - ③ - ④) × 30%			

제3절. 세액공제

8. 이외 세액공제 (p207)

(1) 월세 세액공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세대의 세대주68)로서 해당 과세기간 총급여 액이 8천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7천만원 초과자 제외)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지급하는 월세액(연 1,000만원 한도)의 15%(총급여 액이 5,500만원 이하이면서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초과하지 않는 경우 17%)를 공제한다.

(2) 외국납부세액공제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에 국외원천소득이 합산되어 있는 경우로서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외국에서 외국소득세액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때에는 외국소득세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제4장. 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 후 4대보험 정산

개요

- 1. 4대보험 보수총액 신고 (p215)
 - (1) 의의
 - ① 근로자가 입사를 하게 되면 근로계약서상 급여액을 기준으로 소득월액을 기입하여 자격취득 신고를 하게 된다. 이후 다음해 4대보험이 정산되기 전까지는 입사일의 소득월액 기준으로 4대보험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실제 근로자가 받은 급여액과 신고된 금액에 차이가 발생하게 된다.
 - ② 때문에 근로자의 근로소득이 확정되는 연말정산 이후 보수총액(소득총액)을 신고받아 전년도의 실제 보수액을 기준으로 정산해 정확한 4대보험료를 부과하게 된다.

제4장. 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 후 4대보험 정산

4대보험 정산 (p221)

종류	신고대상	신고기한	정산시기	
국민연금	근로자, 사용자	5.31.		
건강보험	근로자, 사용자	근로자 : 3.10. 사용자 : 5.31. 성실신고 사용자 : 6.30.	근로자 : 4월분부터 사용자 : 6월분부터 성실신고사용자 : 7월분부터	
고용·산재보험	근로자 (일용근로자포함)	3.15.	4월분부터	

제4장. 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 후 4대보험 정산

4대보험료율 (2024년 기준)

구분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보험료율		7.09%	0.9182%	9%	1.8% (업종별상이)	업종별상이
부급 A SINCE	사용자	3.545%	0.4591%	4.5%	0.9%	사용자
	근로자	3.545%	0.4591%	4.5%	0.9% + a (업종별상이)	100%



실무 적용시에는 세법을 확인하세요!

감사합니다.